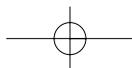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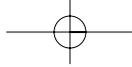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5년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및 주요 법령

농 촌

농 업

차 례

0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6
0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년~'19년) 시행	7
0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8
04.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지원 강화	9
05.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 법제화	10
06.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11
07.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12
08.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확대	13
09.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4
10. 농지구묘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16
11.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조정	17
12.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18
13.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19
14. 농협법 개정에 따른 '판매농협' 변혁 본격화	20
15. 사상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실시	21
16.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22
17.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23
18.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 도입	24
19.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5
2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시행	26
2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27

식량 · 농자재 ·
식품

- 22.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30
- 23.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실시 31
- 24. 들녘경영체 선정요건 및 지원사항 확대로 공동영농 활성화 32
- 25. 농지 거주지가 달라도 농기계 임대가능 33
- 26. 식품기업 인력매칭 확대사업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34
- 27.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요건 완화 35
- 28. 대(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36

축산 · 동물

- 29.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38
- 30.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지원 39
- 31.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40
- 32.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41
- 33. 반려견(伴侶犬) 동반 외출 시 관리기준 강화 42
- 34. 동물복지인증제 확대시행 43
- 35.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44
- 36.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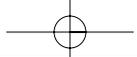
유통 ·
소비과학

- 37. 농식품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개국 48
- 38.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49
- 39.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50
- 4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51
- 41.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 지급 52
- 42. 한-유럽(EU)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시행 53

기타

- 43. '15년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폭 확대 56





농 촌

0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6
0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년~'19년) 시행	7
0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8
04.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지원 강화	9
05.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 법제화	10
06.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11
07.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12
08.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확대	13
09.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4





0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창조행정담당관실 ☎ 044-201-1384



주요 내용

●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15년 7월 7일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한사항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통상 건물, 토지는 10년 / 기계, 장비는 5년) 동안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금지 등 일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보조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 보조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매수자·금융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전남지역 민간보조시설 907개 중 88개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담보 제공 되거나 제3자에게 매매 (감사원 감사결과, '13. 9월)

● 부기등기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비정상적 사례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시행 >

- **추진배경**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제3자 매매 등 재산처분 사례 방지
-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축물 등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 (기재예시) 동 재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등기 등)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0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15년~'19년) 시행

농촌정책과 ☎ 044-201-1520

주요 내용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5년~'19년)을 시행합니다.**
 -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복지, 교육 등 7대 분야에 46조 5천억원을 투·융자합니다.
- **분야별로는 일자리 분야·안전 분야를 신설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과 재해취약시설 보수, 범죄·사고 예방시책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 농어업인 복지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며, 의료취약지 해소 지원, 농·수협 등의 복지전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농어촌학교의 스마트러닝을 위한 ICT기반을 늘리고 거점 우수중학교를 육성하는 등 청소년 교육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 취약한 주거환경은 마을단위로 종합 개선하고 소형 LPG 저장탱크, 농촌형 교통모델 등 생활체감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농어촌다움'이 보전되는 환경·경관 조성시책을 강화하였습니다.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 **추진배경**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04.3)에 따라 매 5년마다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추진
- **주요내용**
 - 「활력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복지, 교육 등 7대 분야에 46조 5천억원 투·융자(18개 부처·청 협력)
 - * 7대 분야 :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 환경·경관, 안전
- **관련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시행일** : 2015년 1월 ~ 2019년 12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맞춤형정책정보>농업인>교육:인력)



0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경영인력과 ☎ 044-201-1538~9

주요 내용

●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 :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5년) 및 매년 시행,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낙후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 이주자 우대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비용 지원 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추진배경** :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의 수립(5년),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낙후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 이주자 우대지원 등
- **관련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04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지원 강화

경영인력과 ☎ 044-201-1537

주요 내용

-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등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 먼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들이 가능해집니다.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였으나, '15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부담을 낮췄습니다.
 -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합병 또는 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한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의 근거와 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농업법인 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농업법인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투자유치 및 경영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확대(농업경영, 가공·유통 등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 ②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 조정(무한연대 책임 → 출자액 한도)
 - ③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유형 확대
(합병·합자회사만 가능 → 합병·합자·유한·주식회사 가능)
 - ④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 근거 및 절차 마련
-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8조, 18조의2, 19조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알림소식>보도자료>농업분야 중소기업인 농업법인의 손톱 밑 가시 제거)



05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 법제화

지역개발과 ☎ 044-201-1560



주요 내용

● 농촌의 다양한 농업문화, 생산기술 등 유산자원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된 유산에 대해 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2013년부터 고시로 운영되었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

● 지자체와 주민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의 지원으로 소중한 우리의 농업유산을 제대로 보전·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정부는 매년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지정된 유산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이를 보전·관리하고 활용하는데 3년간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법제화 내용 〉

- **추진배경** : 농촌의 다양한 농업유산자원을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 발생
- **주요내용**
 -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시장·군수는 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 **시행일** : 2015년 7월(잠정, '15. 1. 12 국회 본회의 통과)



06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지역개발과 ☎ 044-201-1558

주요 내용

- '15년부터 생활·위생·안전 등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 슬레이트 지붕 교체, 단열 강화 등 주택 개량과 상·하수도 설치, 진입로 확장, 옹벽 보강 및 빈집 철거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이 사업은,
 -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15.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구당 3년에 걸쳐 최대 70억원(국비 기준)이 지원되는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시행 〉

- **추진배경** :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 **주요내용**
 - ① 생활·위생 인프라 : 상·하수도 설치, 빈집정비, 골목정비 등
 - ② 안전확보 : 재해예방시설 설치, 소방도로 확장, 노후시설 보수 등
 - ③ 주택개량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벽체·창호 단열 등
- **관련법령**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 **시행일** : 2015년 3월(사업대상지 선정), 4월 이후 본격 추진



07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주요 내용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높아집니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확대됨으로써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확대 지원 〉

- **추진배경**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 **주요내용**
 -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85만원 → 91만원)
 - *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 확대(38,250원 → 40,950원)
- **시행일** : 2015년 1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08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확대

농촌산업과 ☎ 044-201-1583

주요 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학교 등 다양한 체험객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약 50%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15년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을 완화(보험료의 50% → 20%)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사고 대응력 확대
- **주요내용**
 - 마을의 안전·화재 보험료 자기부담 비율 하향 조정(50%→20%)
- **관련법령**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
- **시행일** : 2015년 3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09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촌산업과 ☎ 044-201-1582



주요 내용

- 2015년 6월 4일부터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성장 가능성있는 6차산업 사업자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여 창업·판로·금융 등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6차산업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특정 자원 및 인프라가 집적화된 지역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여 농공단지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타법상의 단지(특구) 지정을 의제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공동 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업인 및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를 확산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

- **추진배경** : 농업인 및 지역단위 6차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시행 및 인증 사업자에 대한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구 지정 및 지정 효과, 지원사항 등
- **관련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5년 6월 4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농업

10.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16
11.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조정.....	17
12.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18
13.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19
14. 농협법 개정에 따른 '판매농협' 변혁 본격화.....	20
15. 사상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실시	21
16.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22
17.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23
18.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 도입	24
19.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5
2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시행	26
2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27





10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농지과 ☎ 044-201-1737



주요 내용

- '15년 1월 1일부터 농지은행 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30,000원/3.3㎡에서 35,000원/3.3㎡으로 5천원 인상합니다.
- 그 동안의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전업농의 농지매입 부담이 감소하여 영농 전문화·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에도 농지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농지매매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5년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전업농의 농지매매 부담 완화 및 영농규모화 촉진
- 주요내용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3만원/3.3㎡ → 3.5만원/3.3㎡)
- 관련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1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

농지과 ☎ 044-201-1742

주요 내용

- '15년 1월 1일부터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이 70%에서 80%로 10%p 상향됩니다.
- 지난해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평가율 70%)'로 선택의 폭을 확대한 데 이어,
- 추가적으로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합니다.
-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선택한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이 종전 지원자보다 인상*되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이 더욱 강화되는 등 농지연금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예) 74세, 감정가격 2억원 기준, 종신행 가입시 : 월 지급금 10만원 수준 증액



감정평가율

70%에서 80%로 10%p 상향

〈 2015년 농지연금 사업의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

- **추진배경** : 농지연금 사업활성화를 통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 80%)
- **관련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알림소식)공지·공고

12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6

주요 내용

-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 자금의 대출금리가 3%에서 1%로 인하됩니다.**
 - 대상자금 0.1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1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금리인하 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기존금리	변경금리	대출잔액 ('14.12말)	'15년 지원규모	농가이자 경감내역	비고
*농업경영회생자금	3%	1%	1,371	600	31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제5조의 2)」 공포 시부터 적용

- 적용대상은 '15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인하 〉

- **추진배경** :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융자사업 이자율 인하 : 농업경영회생자금 : 3% → 1%
 -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포 시부터 적용됨
- **관련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 **시행일** : 관련법령 개정안 공포시(잠정, '15년 2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13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60

주요 내용

-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점·제조업자 등에 대해 농수산물 구매금액의 일정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의제(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주로 영세한 음식점·제조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난 '14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한도액이 설정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50%, 2억원 초과는 40% 공제한도가 설정되었고 법인 사업자는 매출액의 30%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특히 2015년도부터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새로 개정 되었습니다.
 - 개인 음식점 경영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55%, 2억원 초과인 경우 4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농식품 제조업체는 1·2기 매출액에 따라 공제한도를 적용받던 것을 1년 원료 가액을 고려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원료 매입·매출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식품 제조업체를 고려하여 1년간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한 공제가능 금액에서 상반기(1기)에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하반기(2기)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14 농협법 개정에 따른 '판매농협' 변혁 본격화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8



주요 내용

-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전문성을 갖춘 농협이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미,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농협금융지주회사로 이관('12.3)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 판매·유통분야 경제사업도 단계적('15.2월~'17.2월)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최근 농협법을 개정하여 경제사업 이관을 제약하는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14.12.31 시행)
 - 이번 농협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된 후에도 원활하게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현재 농협은행 등이 금융업무를 활발히 수행하는 것처럼 농협경제 지주회사도 판매·유통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판매농협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 〉

- **추진배경** : 농협 본연의 역할인 판매 농협화로 농업인 권익증진 도모
- **주요내용**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수행 근거마련 및 사업이관을 위한 출자한도 제한 완화
 - 경제지주가 조합자금 지원 등 업무 시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15 사상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실시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4

주요 내용

-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2015년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년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되었으며, 농협 등 1,328개 조합 240여만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 * 농·축협 1,117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조합이 동시선거에 참여
-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부정·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14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1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불법선거운동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 지급(신고전화 국번없이 "1390")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선관위,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지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시 조합장 선거 주요 일정 〉

일 정	내 용	관 련 자
'14.9.21. ~ '15.3.11.	• 기부행위 제한	누구든지
'15.2.19	• 선거일 공고	관할 선관위
'15.2.24. ~ 2.25.	• 후보자등록 신청	후보자
'15.2.26. ~ 3.10.	•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15.3.1	• 선거인명부 확정	해당 조합
'15.3.11.	• 투표(오전 7시 ~ 오후 5시)	선거인(조합원)

-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장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16 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6

주요 내용

-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합니다.
 - '14년 지급단가(90만원/ha)보다 10만원 인상(증 11.1%)됨에 따라 농가는 평균 11만원(평균 재배면적 1.1ha 기준)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귀농인 등 신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쌀 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15년도 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기존) 직전 2년 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농산물판매액 900만원 이상 → (개선)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면적 1천㎡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2015년도 쌀직불금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지원
- 주요내용
 - ① 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90만원/ha → 100만원/ha)
 - ②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등록연도 직전 2년이상 경작면적 1만㎡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 등록연도 직전 3년기간 중 1년이상 경작면적 1천㎡ 이상 또는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
- 관련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5년 1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17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8

주요 내용

- '12년~'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위의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한편,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의 밭농업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 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ha 포함
 - 또한,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ha을 지급합니다.
- 한편,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 2015년도 밭농업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 **주요내용**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을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 ① 밭농업직접지불제도 도입(모든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25만원/ha 지급)
 - * 다만, 기존 밭농업직불대상인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40만원/ha 지급(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ha 포함)
 - ②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직불금 인상(40만원/ha→50만원/ha 지급)
- **관련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2(밭농업직접지불 제도의 시행)
- **시행일** : 2015년 1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18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도입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80



주요 내용

- **농가의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이 시범사업으로 도입됩니다.**
 -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 농산물의 가격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량만을 보장하는 재해보험을 보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망이 확충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도상연습('13년, '14년) 결과에 따르면, 보험가입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감소(양파 22%, 포도 27%)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양파, 콩, 포도) 도입 〉

- **추진배경** : 농업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영위험에 대비
- **주요내용** :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양파, 콩, 포도)
 - ※ 지급보험금 = 보장수입(과거 기준수입 × 보장률) - 실제수입
 - ① 기준수입 : 개별농가의 과거 평년수확량과 과거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곱
 - ② 실제수입 : 개별농가의 실제수확량과 시장가격의 곱
 - ③ 보장률 : 가입자가 보장수준을 고려하여 60~80% 수준에서 선택
- **관련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장 재해보험사업
- **시행일** : 2015년 6월(보험 판매개시)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책홍보>업무계획>농업수입보장보험)

19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6

주요 내용

-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대상품목) 2015년부터 시설 무·백합·카네이션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46개로 확대됩니다.
 - (보장범위) 과수 5품목에 대해 일부 재해(태풍·우박 등)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 2015년에는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품목에 사과가 신규로 추가(3개 시·군)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배·단감은 사업지역이 확대(배 : 12 → 30, 단감 : 3 → 12)됩니다.
- **농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 **추진배경** : 현장 수요에 부응한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주요내용**
 - 대상품목 확대(43품목 → 46품목)
 - 보장범위 확대
 -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14 : 배·단감 → '15 : 배·단감·사과)
 - 사업지역 확대 : 배(12개시군 → 30), 단감(3개 시군 → 12), 사과(신규3)
- **관련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보험목적물)
- **시행일** : 2015년 2월
 - * 농업재해보험 신규도입품목은 '15.10~11부터 판매 예정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2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시행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4



주요 내용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정확성·신속성이 강화됩니다.**
 - '15년 6월부터 국가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손해평가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 * 손해평가사는 '15.12월 1차 시험을 시작으로 매년 1회 선발
-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현장조사, 손해평가 등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절차 및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나,**
 - 기존에는 지역 농업인 위주의 손해평가인 구성으로 손해평가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손해평가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 손해평가인 중 농업인 비중이 65%, 재해피해 발생 시 본인 경작지 정비에 바빠서 손해평가인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 참여여부는 자율)
-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로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조사를 통한 농입인의 실익제고 및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재해발생시 손해평가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자격제도 운영
- **관련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손해평가사)
- **시행일** : 2015년 6월 4일
 - * 손해평가사 제1차 자격시험은 '15.12월에 실시 예정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2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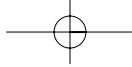
주요 내용

- **농업분야 및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개정·시행합니다.**
 - 관련 업무를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임업·산촌지역 개발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우선,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분야 집합투자업자의 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적정인력) 외에 추가적으로 인력(2명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 삭제
-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

- **추진배경** : 농업 및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 **주요내용**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 폐지 및 관련 분야 집합투자업자의 인력 요건 완화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설립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
- **관련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식량 · 농자재 · 식품

22.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30
23.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31
24. 들녘경영체 선정요건 및 지원사항 확대로 공동영농 활성화	32
25. 농지 거주지가 달라도 농기계 임대가능	33
26. 식품기업 인력매칭 확대사업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34
27.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요건 완화	35
28. 대(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36



22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식량정책과 ☎ 044-201-1822

주요 내용

- 2015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tariffication) 됩니다.
 - * 관세화란 수입물량제한 등 관세 이외의 수입제한 조치를 없애고 이를 국내·외 가격차이로 계산한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난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한 물량 408,700톤 (5%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 만약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하여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입니다.
- 또한,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합니다.
- 참고로,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고 수입 급증시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할 수 있도록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9.30)하였습니다.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 추진배경 : WTO 농업협정 이행 및 국내 쌀 생산기반 보호
- 주요내용
 - 관세화 시행(수입쌀 513% 관세율 적용,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은 기존대로 5% 관세율 적용)
-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 시 행 일 : 2015년 1월 1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주요정보 바로가기>쌀 관세화 유예종료(특별 홈페이지))

23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실시

식량정책과 ☎ 044-201-1815

주요 내용

- 2015년 7월 7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 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 판매가 금지됩니다.
 - 금번 조치는 쌀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 *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 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며,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
-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금번 조치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

- 추진배경 : 쌀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
- 주요내용
 - 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 ②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 ③ 처벌규정 강화(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 시 행 일 : 2015년 7월 7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24 들녘경영체 선정요건 및 지원사항 확대로 공동영농 활성화

식량산업과 ☎ 044-201-1838

주요 내용

- **지역의 공동영농 조직인 들녘경영체 구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행 집단화된 농지 50ha이상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단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영농이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했습니다.**
 - * 예) 산간지역과 같이 마을별 10~40ha단지로 분산된 경작지를 합하여 50ha이상 들녘경영체 구성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 **또한, 정부지원 RPC와 연계·출하하는 경우에만 들녘경영체로 인정하던 것을 일정규모 이상 자체 도정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 연간 벼 2,000톤 이상 가공능력이 있는 자체 RPC를 기 보유하고 생산물량의 80%이상을 계약재배로 수매, 수매물량의 50%이상을 품종표시 자체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
-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의 종류 및 공동경작면적 규모에 따른 지원액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원 시설·장비가 3종(육묘장,광역방제기,무인헬기)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지원금액 내에서 경영체에서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공동경작면적 규모에 따라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 (교육·컨설팅) 100ha미만(1천만원), 100~200ha미만(2천만원), 200~400ha미만(3천만원), 400ha이상(4천만원)
(시설·장비) 400ha미만(2억원 이내), 400~600ha미만(3억원 이내), 600ha이상(4억원 이내)

< 2015년도 들녘경영체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확대 >

- **추진배경** : 공동영농을 실시하는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해 쌀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대
- **주요내용**
 - ① 선정기준 완화(집단화된 농지 50ha → 분산된 농지도 공동영농 가능시 인정)
 - ② 선정기준 완화(정부지원RPC연계 의무 → 일정규모 자체도정시설 보유한 경우 예외)
 - ③ 지원장비 종류 확대(지원 시설·장비 3종 → 경영체에서 필요한 시설·장비 선택)
 - ④ 지원규모 확대(공동경작 규모에 상관없이 시설·장비 2억원 지원 → 규모에 따라 최대 4억원 지원)
- **관련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시행일** : 2015년 1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25 농지 거주지가 달라도 농기계 임대 가능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40

주요 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해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 '03년부터 '14년까지 33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군에 최대 6개소까지 분소를 설치·운영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 * 지역특성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임대농기계 선정, 임대수수료 등을 심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업인 등이 편리하게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수의 농업인 등이 이용 하도록 단기 임대(1~3일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뿐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들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경작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 타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확대·시행으로 농작업 불편 해소 및 농기계 이용률 향상이 기대됩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지원 〉

- 추진배경 :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부족 해소
- 주요내용
 - 관내 농업인 뿐 아니라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들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여성 및 고령농업인에게는 우선 임대
- 관련법령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시 행 일 : 2015년 1월 1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26 식품기업 인력매칭 확대사업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18

주요 내용

- **식품기업 인력매칭 확대사업 및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식품기업 인력매칭 확대사업 : 식품기업과 취업희망자들의 구인구직을 지원해주는 사업
- **우선, 식품산업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구직 희망자들의 취업 및 창업 경쟁력 제고
 - 신식품 트렌드 직장 취업 및 창업교육
 -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 대학생 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
- **맞춤형 교육 및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을 통한 식품기업 인력매칭 확대사업으로 식품기업 및 식품산업 전문인력들 간의 원활한 구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식품기업 인력매칭 확대사업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 **추진배경** : 식품기업 인력 매칭 확대사업 및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① 교육인프라구축(식품교육 수요조사·분석, 교육프로그램 협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 식품기업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구축)
 - ② 교육프로그램 운영(신직업 창업교육 및 NCS기반 대기업 교육프로그램, 대학생·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시행일** : 2015년 2월(잠정, 신규 사업 구축 중)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27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요건 완화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7

주요 내용

- 우수외식업 지구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 또한, 지정요건 기준이 총 매출 규모 및 식재료 구매액에서 외식업소의 수로 변경됩니다.
 - * (종전) 해당 지구내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규모가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관련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변경)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를 가지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을 폐지합니다.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

- **추진배경** :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외식업 지구 확대
- **주요내용**
 - ① 지정요건 완화
 - 외식산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유 외식업소 비율(70% → 40%)
 - 외식산업 총 매출 규모가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 ②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 확보) 폐지
- **관련법령** :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제3호
- **시행일** : 2015년 1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알림소식>보도자료>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강화)



28 대(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수출진흥과 ☎ 044-201-2172

주요 내용

●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 (정보제공) 대한상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 발굴 조사단'을 구성하고 중국 성(省)별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 제공합니다.
- (물류)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 물류기지를 운영 · 지원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중국 7개소)와의 연계 배송망을 구축합니다.
- (통관) 중국의 인증 · 검사전문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통한 수출자 등록 · 중문 라벨제작 등 통관 지원(90%)을 확대합니다.
- (현지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대한상의 등과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 상품화 · 마케팅 등 현지화 관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온라인 진출) 1호점(1號店), 알리바바(阿里巴巴) 와 같은 주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입점 희망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입점절차 · 브랜드 마케팅 전략 관련 교육 ·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 (기준)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 : 1호점('13.10), 알리바바('14.10)

〈 2015년도 대중국 농식품 수출 지원 항목 〉

- **추진배경** : 한-중 FTA 활용,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집중지원 추진
- **주요내용**
 - ① 성(省)별·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 ② 청도 물류기지과 현지 냉장·냉동 물류센터 이용 지원
 - ③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④ 현지화를 위한 상품화·마케팅·법률자문 등 지원
 - ⑤ 온라인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 **관련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시행일** : 2015년 3월

참고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www.at.or.kr



축산 · 동물

29.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38
30.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지원	39
31.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40
32.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41
33. 반려견(伴侶犬) 동반 외출 시 관리기준 강화	42
34. 동물복지인증제 확대시행	43
35.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44
36.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45



29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축산정책과 ☎ 044-201-2317

주요 내용

●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 전업농규모 농가까지 확대(사육시설면적 : 소 300㎡초과, 돼지 500㎡초과, 닭 950㎡초과, 오리 800㎡초과)

●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

● **추진배경** :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주요내용**

·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면적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축종	<15. 2. 22 이전> ~전업규모까지	<15. 2. 23 이후> ~준전업규모까지	<16. 2. 23 이후> ~소규모까지
소	600㎡ 초과	300㎡ 초과	50㎡ 초과
돼지	1,000㎡ 초과	500㎡ 초과	50㎡ 초과
닭	1,400㎡ 초과	950㎡ 초과	50㎡ 초과
오리	1,300㎡ 초과	800㎡ 초과	50㎡ 초과

● **관련법령** :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축산법 시행령)

30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지원

축산경영과 ☎ 044-201-2332

주요 내용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을 통한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실시 〉

- **추진배경** :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 등(농·축협은 제외)
 - ② 지원내용 : 직거래 판매장 등 신축 및 임대료(융자금 활용), 냉장·냉동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 ③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④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
 - ⑤ 2015년 지원규모 : 20개소 (60억원)
- **관련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시행일** : 2015년 1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31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방역총괄과 ☎ 044-201-2358

주요 내용

- 구제역 재발방지 및 축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구제역 발생시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규모 · 고령 사육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자체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백신접종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 **추진배경** : 전국 상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 등은 자체 접종 어려움을 호소
- **주요내용**
 -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 지원형태 : 국고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시행일** : 2015년 1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알림소식>보도자료>연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32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방역총괄과 ☎ 044-201-2362

🔍 주요 내용

- **가축 질병발생 시 농가의 생산·출하정보를 통한 방역관리 지원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돼지·돼지고기(국내산에 한함) 이력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 돼지 질병 등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돼지 사육시설 마다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면 문제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농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소는 마리당 귀표를 장착하여 '개체별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나, 돼지는 사육두수가 약 1천만두(소는 약 300만두)에 이르고 사육기간이 6개월(소 2~3년)밖에 되지 않아, '농장단위 이력제'를 추진
 - 농장단위이력제는 양돈농장별로 고유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해서 같은 날 같은 농장에서 출하되어 도축된 돼지는 같은 이력번호를 갖게 됨
 - 도축이후 가공, 판매단계에서는 도축시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포장지에 붙여 유통하고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게 됨
 - 참고로, EU(2005년) 및 캐나다(2013년)에서도 돼지이력제는 농장단위이력제로 추진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 **추진배경** :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방역의 효율성 도모 및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주요내용**
 - 사육단계 : 돼지 사육농가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 유통단계 : 농장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이력번호 발급 및 기록·관리
 - 소비단계 : 스마트폰 앱, 인터넷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가능
-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4년 12월 28일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알림소식>보도자료>돼지고기이력제)



33 반려견(伴侶犬) 동반 외출 시 관리기준 강화

방역관리과 ☎ 044-201-2383



주요 내용

-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소유자가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배설물 수거범위가 확대 적용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존)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
 - (개정)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위의 것
-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도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등 거주자 상호간 마찰·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강화 >

- **추진배경** :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배설물로 인한 공동주택 상호간 마찰·불편 해소
- **주요내용**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배설물 수거범위 확대
 - (현행)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
 - (변경)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위의 것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 **시행일** : 2015년 1월 20일

34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시행

방역관리과 ☎ 044-201-2383

🔍 주요 내용

-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를 대상으로 인증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육계로 확대하여 계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됩니다.
 - 사육기관과 용도에 따라 육계, 토종계,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하며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으로 운송되며,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가공·생산된 축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어, 사육에서부터 도축 단계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되었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2015년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대상 축종 연차별 확대
- 주요내용
 - ①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대상 축종 확대(산란계, 돼지 → 육계 추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 시 행 일 : 2014년 12월 15일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35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방역관리과 ☎ 044-201-2377



주요 내용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 이동통제, 살처분, 초소 등 방역조치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였으나,
 - '15년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 방역대 내에서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에 대해서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AI 방역조치사항 변경 주요 추진내용 〉

- **추진배경** : AI 방역조치로 인한 국가재정부담 완화 및 국민불편 최소화
- **주요내용**
 - ① AI 발생 시 방역대 내 가금에 대해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 실시
 - ② AI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시설 운영하여 축산차량 선별 소독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5항
- **시행일** : 2014년 12월(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알림소식)보도자료>농식품부 AI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36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방역관리과 ☎ 044-201-2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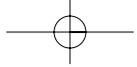
주요 내용

-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13.2월) 발표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15.3월)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13.5.31)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을 추가하였고,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으로('14.3.24) 가축사육거리제한 규정 적용을 3년 유예하였고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습니다.
 -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14년 7월부터 '15년 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 〉

- **추진배경** : 무허가 축사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①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한우 추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등)
- **관련법령** :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시행일** : 2015년 3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알림소식>보도자료>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 · 소비과학

37. 농식품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개국	48
38.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49
39.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50
4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51
41.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 지급	52
42. 한-유럽(EU)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시행	53



37 농식품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개국

유통정책과 ☎ 044-201-2218

주요 내용

- **농식품 ·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은 신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홈쇼핑은 TV 방송을 통해 생산자-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최적화된 농산물 직거래방식입니다.
 - 가격하락 등으로 농산물 물가변동이 발생 시 TV 홈쇼핑을 통한 신속 · 대량 판매로 농어민들의 수익안정에 기여합니다.
 - 소비자 선호에 맞는 농식품의 가공 · 표준화 · 규격화 등 상품화를 촉진합니다.
-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농촌관광 상품의 개발과 판로 확보가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 TV 홈쇼핑은 고유의 채널을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한 유통 시스템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식품 판로로 활용 가능합니다.

〈 농식품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개국 〉

- **추진배경** :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와 수급안정 등을 위해 개국 추진
- **주요내용**
 - ①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생산자-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음
 - ②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물가변동에 대처해 즉각적인 물량 소진을 통한 농어민 수익안정에 기여
- **시행일** : 2015년 6월(개국 준비 중)

38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유통정책과 ☎ 044-201-2220

🔍 주요 내용

- **모바일앱 및 SNS를 활용한 농업관측 정보 제공방식 다각화로, 농업인·유통인·소비자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관측정보는 인쇄물 및 PC를 통한 인터넷으로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15년에는 농업관측정보 모바일앱과 SNS(카카오토티)를 통해서도 농업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월보, 속보 등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농업관측 관련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SNS) 관측정보와 함께 제철농산물·건강 요리법 등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관련정보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가능합니다.
 - 또한, 관측정보를 정보이용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

- **추진배경** :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로 이용자 소통 강화
- **주요내용**
 - ① 제공방식 다양화(인쇄물, 인터넷 → 모바일앱 및 SNS 추가)
- **관련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 **시행일** : 2015년 1월

📌 **참고**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스토어 접속 > 농업관측센터 검색 및 앱 설치
카카오토티 접속 > 친구찾기 > 농업관측센터 > 소식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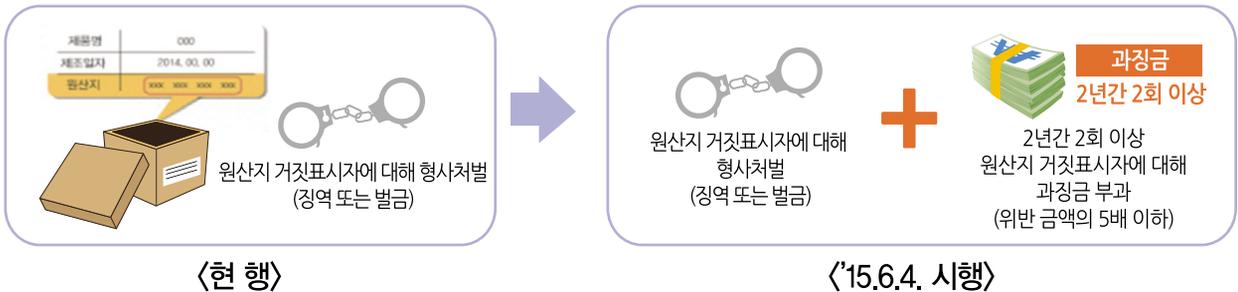
39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6

주요 내용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합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하며,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합니다.



〈현행〉

〈'15.6.4. 시행〉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추진 〉

- **추진배경**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
- **시행일** : 2015년 6월 4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4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원예경영과 ☎ 044-201-2259

주요 내용

- 시설원예 농가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11년부터 지열냉난방시설·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하였으나 초기 사업비 부담과 지원대상 제한으로 확대보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부터는 지중열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 지중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열냉난방시설 대비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약 37% 정도 절감 기대) 있어 농가 부담이 완화되고,
 - 폐열 재이용시설은 발전소 온배수·소각장 등 폐열의 농업에너지화를 통해, 버려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에너지절감시설로 지원해 온 공기열냉난방시설 농가 지원기준을 0.1~0.5ha에서 0.1~1.0ha로 조정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2015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확대보급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대상 확대(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추가)
 -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요건 조정(온실면적 0.1~0.5ha → 0.1~1.0ha)
- 시 행 일 : 2015년 1월



41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 지급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0



주요 내용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개편하여 유기지속직불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하였으나, '15년부터는 동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는 현행 유기 지급단가의 50%인 논 30만원/ha, 밭 60만원/ha이며,
 - 우선 3년간 지급하고, 향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영구 지급 등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15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개편 >

- **추진배경**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직불금 3년간 추가 지급(유기 최장 5년 → 유기 최장 5년 + 추가 3년*)
 - * (단가) 논 30만원/ha, 밭 60만원/ha
- **관련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0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 **시행일** : 2015년 3월(잠정, 법제처 심사중)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42 한-유럽연합(EU)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시행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5

주요 내용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유기농식품 인증에 대한 상호 동등성 인정이 2015년 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인증만으로도 유럽연합에서 한국 유기농식품 인증표지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표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업체의 유럽연합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유기제품의 유럽연합 수출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를 첨부하여야 하며, 유럽연합 유기제품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한-유럽연합(EU)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 유럽연합(EU)*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2. 인정 범위

- 가. 한국(또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수입국의 분류기준 적용
-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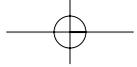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 2018년 1월 31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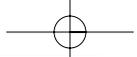
4. 동등성 인정의 조건

- 가.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나.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5. 기타사항 : 상호 동등성 인정은 유럽연합의 시행령 개정(EC No 1235/2008에 한국을 동등성을 인정한 제3국에 포함)이 완료되는 2015년 2월1일부터 효력 발생

 참고 :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동등성인정>한-EU동등성인정)





기타

43. '15년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폭 확대 56





43 '15년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폭 확대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주요 내용

- 2015년에는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선박 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을 20%에서 '15년(1년간) 25%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하 대상항목은 기본수수료, 할증수수료, 재검사수수료 등 모든 검사항목입니다.

<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배경 및 내용 >

- **추진배경** : 해운경기 불황으로 인한 선박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 ①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폭 확대(20% → 25% 인하)
 - ② 인하항목 : 기본수수료, 할증수수료, 재검사수수료
- **시행일** : 2015년 1월1일

참고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ipab.or.kr> (정부3.0정보공개>사전공표대상정보>이사회 개최 결과>제9차 임시이사회 결과 의안번호 제2014-17호)